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전면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를 위함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 「영동군 지능정보화 조례」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조항 신설 (안 제4조)
- 정보화책임관 명칭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 (안 제5조)
-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정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8, FAX : (043)740-30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동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하여 영동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영동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의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이나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

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정보취약 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영동군지역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다.